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2호, 2018. 12. 24., 제정]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1

1 ()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임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5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 나. 화학물질의 용도
 -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
 - 바.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효과·효능
 - 나. 해당 제품의 유해성
 - 다.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 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통지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 ()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1

8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물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9 () ①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은 제외한다): 7년
2. 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10 ()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물질의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물질의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4.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 () 법 제1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2.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12 ()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13 ()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 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로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등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유사할 것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에 관한 효과·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할 것
 3. 그 밖에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⑤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된 범위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4 () 법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승인유예기간은 별표 1과 같다.

15 ()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유예대상 기준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
2. 물질승인 신청자료 작성에 대하여 제출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2

16 ()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2.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17 () ①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외한다): 5년
2. 법 제20조제5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18 () ①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2.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3. 살생물제품의 국내의 사용 및 규제정보
4.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
6.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9 ()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형(劑形)
-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 다. 유통기한
- 라. 사용상 주의사항
- 마. 용도

20 ()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가. 살생물물질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 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1 ()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2 ()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 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자료
 2.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가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2.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제품의 사용 목적, 용도, 제형, 유해성·위해성, 효과 및 효능이 기준살생물제품과 유사할 것
 3. 그 밖에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③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2. 기준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이 변경된 범위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의 범위를 포함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3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승인된 바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살생물물질
 -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
2.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통하여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이 인정되었을 것

3

24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에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 통지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의 3일 전까지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하려는 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에 거부 사실 및 거부 사유를 적어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5 ()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1회에 5년씩 총 2회로 한정한다)을 요청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료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말한다.

26 ()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같은 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자료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려는 금액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27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8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판매한 시점(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나 중지명령을 받은 시점을 말한다)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에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제2항에 따른 판매기간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를 시작하지 않거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하여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점 또는 수량을 확정할 수 없어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금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판매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1 (가)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2 ()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5

33 ()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또는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에 필요한 별도의 실험실을 갖추 것
2. 장비: 국소배기장치, 시료 전처리 장비 및 정량분석 장비를 각 1대 이상 갖추 것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 것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② 법 제4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험·검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법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4 ()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제3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검사기관의 명칭
2.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3. 시험·검사기관의 소재지
4.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5. 시험·검사 분야

④ 시험·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서의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어 변경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 법 제4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

2.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3.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5. 법 제47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활용

36 ()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7 ()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6.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특례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
9.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권고, 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업무
12.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업무

6

38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2.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물질승인
3.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의 확인
8.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품승인
9.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의 접수·승인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법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13. 법 제29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14.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 및 공개
15. 법 제33조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의 접수 및 확인 결과의 통지,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 확인 및 제출명령

16.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평가
17. 법 제4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취소
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9. 법 제5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20.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1. 제6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방법의 고시
22.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험방법의 고시
23.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의 금지명령
4. 법 제2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의 중지명령
5. 법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에 관한 보고 접수 및 조치 권고
6.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
7.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9.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53조제3호에 따른 청문

39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2. 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공개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확보 및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7

40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412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